



고객 통지문

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.


“귀하의 자동차는 등화장치 관련 제작 결함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.”

고객님께

이번 결함 시정 통지로 인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, 통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, 시정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아우디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1. 제작 결함의 내용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| 차명/제작연월일 | A8 50 TDI LWB qu. Premium: 2022.09.05~2023.08.21, A8 50 TDI qu. Premium: 2022.08.23~2023.11.02, A8 55 TFSI LWB qu. Premium: 2022.03.16~2023.06.07, A8 60 TFSI LWB qu. Premium: 2022.10.13~2023.06.13, e-tron S qu.: 2021.12.22~2022.12.21, e-tron Sportback S qu.: 2022.01.18~2024.05.23, S8 LWB TFSI: 2023.02.15~2023.06.06, SQ8 Sportback e-tron: 2023.11.07~2023.11.15 |
| 나. | 형식 | F8, GE |
| 다. | 결함 장치/부품 사진 또는 이미지 | 등화장치(전조등)  |
| 라. | 결함 원인 | 적응형 전조등의 변환빔은 차량이 전진하고 오른쪽으로 조향하는 경우에만 작동하여야 하나, 등화장치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차량이 곡선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도 전조등의 변환빔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이는 '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' 제38조(전조등)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. |

2.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내용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| 시정조치 개시일 | 2024년 7월 26일(금) (관련 규정에 의하여 1년 6개월 이상) |
| 나. | 시정조치 방법 | 등화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|
| 다. | 시정조치 장소 및 부서 |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/대표번호: 080-767-2834 |
| 라. | 시정조치 비용 | 무상수리(리콜과 관련된 고객님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.) |
| 마. |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| 차량 후진 시 전조등의 변환빔이 작동하는 경우, 국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. |

3. 제작 결함 시정 관련 보상 내용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|
| 가. |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|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 하기 전 1년 이내 그 결함을 자체 시정했던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. |
| 나. | 보상 기간 |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보상 기간 포함 |
| 다. | 보상신청 접수/ 연락처 |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, 대표번호: 080-767-2834 |

4. 추가 안내사항

| | |
|----|--|
| 가. |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. |
| 나. | 리콜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제기 시 고객지원센터(080-767-2834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|

고객님께

아우디코리아는 자사의 자동차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송구스럽게도, 고객님의 차량에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.

이에,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실시하오니,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서비스 시간은 차종에 따라,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아우디코리아가 부담합니다.

본 건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,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

※ 리스 또는 렌트 회사 대상 공지 ※

리스, 렌트 업체가 리콜 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대여하거나, 이미 대여한 차량의 경우 그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 시행(20.10.08)에 따라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